

#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 전 문

(본 원칙의 목적)

본 원칙은 국제상사계약에 적용될 일반적 규칙들을 규정한다.

본 원칙은 당사자들이 그들의 계약이 본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sup>(\*)</sup>

본 원칙은 당사자들이 그들의 계약이 “법의 일반원칙”이나 “상인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의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원칙은 당사자들이 그들의 계약에 적용될 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원칙은 국제적인 통일법규범을 해석 또는 보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원칙은 국내법을 해석하거나 보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원칙은 국내·국제적으로 하나의 입법모델이 될 수 있다.

## 제 1 장 일반규정

### 제1.1조

(계약의 자유)

당사자들은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

(형식의 자유)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이나 진술 기타 행위가 특정한 형식으로 행하여지거나 증명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증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 제1.3조

(계약의 구속력)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은 양당사자를 구속한다. 계약은 동 계약의 계약조건에 따르거

---

(\*) 계약에 본 PICC가 적용된다는 계약조항을 두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다음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예외나 변경을 가할 수 있다.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UNIDROIT Principles (2004), [except as to Articles ...].”(본 계약은 PICC(2004)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제XX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PICC에 추가하여 특정한 법역(jurisdiction)(국가 혹은, 연방국가의 경우, 주)의 법이 적용된다는 계약조항을 두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다음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UNIDROIT Principles (2004), [except as to Articles ...], supplemented when necessary by the law of [jurisdiction X].”(본 계약은 [제XX조 ...를 제외하고는] PICC(2004)의 적용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X국]의 법이 적용된다).

나 합의에 의하여 기타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의 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을 뿐이다.

**제1.4조**  
(강행규칙)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법의 관련 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적, 국제적 혹은 초국가적 기원의 강행규칙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당사자들에 의한 배제 또는 변경)

본 국제상사계약원칙 내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당사자들은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규정의 효력을 감퇴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의 해석과 보충)

(1)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의 국제적 성격과 그 적용의 통일을 증진할 필요를 포함하여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의 적용범위 내에 드는 사항으로서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가능한 한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이 기초하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제1.7조**  
(신의와 공정거래)

- (1) 각 당사자는 국제거래에서의 신의와 공정거래에 좇아 행위하여야 한다.
- (2) 당사자들은 이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1.8조**  
(번복행위)

당사자는 자신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어떤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한 상대방이 그러한 이해를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행위한 때에는 상대방의 그러한 이해에 반하여 그에게 피해가 되게 행위할 수 없다.

**제1.9조**  
(관습과 관례)

(1) 당사자들은 그들이 동의한 관습과 그들이 그들 사이에서 확립한 관례에 구속된다.

(2) 당사자들은 국제거래에서 관련 특정한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그들에 의해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습에 구속된다. 다만 그러한 관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0조

(통지)

- (1)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에, 이는 당해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 통지는 그것이 그 수신인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3) 제2항에서 말하는 통지는 그 수신인에게 구두로 행하여지거나 그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지에서 전달된 때에 그에게 “도달한다.”
- (4) 본조에서 말하는 “통지”는 선언, 요구, 청구 기타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 제1.11조

(용어정의)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에서,

- “법원”은 중재판정부를 포함한다;
-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영업소”라 함은, 계약체결전이나 계약체결시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져 있거나 당사자들에 의해 예기되었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업소를 말한다.
- “채무자”라 함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채권자”라 함은 동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 “서면”이라 함은 그 안에 담긴 정보의 기록을 보존하고 또한 유체의 형태로 재생될 수 있는 모든 통신방법을 말한다.

### 제1.12조

(당사자들이 정한 기간의 계산)

- (1) 수행될 행위를 위해 당사자들이 정한 기간중에 등장하는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그러한 기간을 계산하는 데에 산입된다.
- (2) 그러나 그러한 기간의 말일이 당해 행위를 수행할 당사자의 영업소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후속하는 최초의 영업일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 (3)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시기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는 당해 시기를 정한 당사자의 영업소에서의 그것이다.

## 제 2 장 계약의 성립과 대리인의 권한

### 제 1 절 계약의 성립

#### 제2.1.1조

(계약체결방법)

계약은 청약의 승낙에 의하거나 합의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당사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체결된다.

**제2.1.2조**  
(청약의 정의)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 구속되겠다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계약체결의 제의는 청약이 된다.

**제2.1.3조**  
(청약의 철회)

- (1)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비록 취소불능한 청약이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한 청약은 철회된다.

**제2.1.4조**  
(청약의 취소)

- (1)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그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
  - (a) 청약에서 승낙기간을 정하여 명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 (b) 피청약자가 청약이 취소불능하다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동 피청약자가 동 청약을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

**제2.1.5조**  
(청약의 거절)

청약은 그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1.6조**  
(승낙의 태양)

- (1) 청약에 동의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기타의 행위는 승낙이다.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로는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 (2) 청약의 승낙은 동의의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그러나 청약에 의하여, 또는 관습이나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확립한 관례의 결과로 인하여,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통지함이 없이, 어떤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수행되는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1.7조**  
(승낙기간)

청약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또는, 그러한 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을 포함한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승낙되어야 한다. 구두의 청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제2.1.8조**  
(지정된 기간 내의 승낙)

청약자가 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발송된 때로부터 그 진행을 시작한다. 청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청약에서 표시된 시기에 발송된 것으로 본다.

**제2.1.9조**  
(연착된 승낙. 전달중의 지연)

(1) 연착된 승낙이라도 청약자가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피청약자에게 그것이 승낙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알려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 효력이 있다.

(2) 연착된 승낙을 담은 통신으로 보아 그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그것이 청약자에게 적시에 도달하였을 것이라는 상황하에서 발송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착된 승낙도 승낙으로서 효력이 있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피청약자에게 그는 그의 청약이 실효한 것으로 본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10조**  
(승낙의 철회)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된다.

**제2.1.11조**  
(변경된 승낙)

(1) 청약에 대한 응답으로서 승낙을 의도하고는 있으나 추가 또는 제한 기타의 변경을 담고 있는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자 대응청약이 된다.

(2) 그러나 청약에 대한 응답으로서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또한 청약상의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아니하는 추가적 또는 상이한 계약조건을 담고 있는 응답은 승낙이 된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그 상위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그렇게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은 청약상의 계약조건에 승낙소정의 변경이 가하여진 내용으로 체결된다.

### 제2.1.12조

(확인서)

계약체결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송부되는 서면으로서 계약의 확인을 의도하는 서면이 추가적 또는 상이한 계약조건을 담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다만 그러한 조건이 계약을 중대하게 변경시키거나 그 수신인이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그 상위에 반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13조

(특정한 사항에 대한 또는 특정한 형식에 의한 합의의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

협상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또는 특정한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고 고집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또는 그러한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

### 제2.1.14조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미정인 계약)

(1)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을 의도하는 한, 그들이 고의로 특정한 계약조건을 추후 협상하여 합의하기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사실은 계약의 존재를 막지 아니한다.

(2) 계약의 존재는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a) 당사자들이 그러한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실; 또는
- (b) 동 제3자가 그러한 계약조건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사실.

다만, 당사자들의 의도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정도로 그러한 계약조건을 확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

### 제2.1.15조

(악의의 협상)

(1) 당사자는 자유로이 협상할 수 있고 합의에 부도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악의로 협상하거나 협상을 중단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특히,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합의에 도달할 의사도 없이 협상을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것은 악의이다.

### 제2.1.16조

(비밀유지의무)

협상과정에서 일방이 비밀로 다루어져야 할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상대방은 추후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적절한 한, 이 의무의 위반에 대한 구제는 상대방이

수취한 이익에 기초한 배상을 포함한다.

#### **제2.1.17조**

(통합조항)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조건을 전부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항을 두고 있는 서면에 의한 계약은 사전의 진술이나 합의의 입증에 의해 반박되거나 보충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이나 합의는 그러한 서면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제2.1.18조**

(특정한 형식에 의한 계약변경)

합의에 의한 계약의 변경이나 종료를 특정한 형식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서면에 의한 계약은 다른 방법으로는 변경 또는 종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의 행위에 의해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신뢰하여 행위한 범위까지는 그러한 계약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

#### **제2.1.19조**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1)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표준약관을 사용한 경우에, 제 2.1.20조 내지 제2.1.22조의 제한하에, 계약성립의 일반규칙이 적용된다.

(2) 표준약관이라 함은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일방에 의해 미리 마련되고 또한 상대방과 협상됨이 없이 실제로 사용되는 계약조항을 총칭한다.

#### **제2.1.20조**

(기습조건)

(1) 표준약관에 담긴 계약조건으로서 그 성격으로 보아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계약조건은 그에 의해 명시적으로 수락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2) 계약조건이 그러한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과 표현방법, 표기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제2.1.21조**

(표준약관상의 계약조건과 표준약관 외부의 계약조건 사이의 충돌)

표준약관상의 계약조건과 표준약관 외부의 계약조건이 서로 충돌하는 때에는 후자가 우선한다.

#### **제2.1.22조**

(서식교전)

양당사자 모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그 두 표준약관을 제외하고서는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 계약은 합의된 계약조건 및 그러한 두 표준약관상 그 내용이 공통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체결된다. 다만 일방이 사전에, 또는 사후에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은 그러한 계약에 구속되기를 의도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절 대리인의 권한

### 제2.2.1조

(본 절의 적용범위)

(1) 본 절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어떤 자(“대리인”)가 자신의 이름 또는 타인(“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 있어 동 제3자와 본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대리인의 권한을 규율한다.

(2) 본 절은 본인 또는 대리인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만을 규율한다.

(3) 본 절은 법에 의해 부여된 대리인의 권한이나 공공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해 임명된 대리인의 권한을 규율하지 아니한다.

### 제2.2.2조

(대리권의 발생과 범위)

(1) 본인에 의한 대리권의 부여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다.

(2) 대리인은 대리권이 부여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2.2.3조

(현명대리)

(1) 대리인이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고 또한 제3자가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함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에,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시키며 대리인과 제3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생성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로 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인과 제3자 사이에서만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 제2.2.4조

(익명대리)

(1) 대리인이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고 또한 제3자가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함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어야 하지도 않은 경우에,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인과 제3자 사이에서만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2)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이 어떤 기업을 대리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동 기업의 소유자라고 표시한 때에는, 동 제3자는 동 기업의 실제소유자를 알게 되는 즉시 그가 동 대리인을 상대로 가진 권리를 동 실제소유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 제2.2.5조

(무권대리 또는 월권대리)

(1) 대리인이 권한 없이 또는 그의 권한을 넘어 행위한 경우에, 그러한 행위는 본인과 제3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2)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또는 그러한 대리인이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는 것으로 제3자가 합리적으로 믿게 된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제3자에 대하여 그러한 대리권의 결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2.2.6조

(무권대리인 또는 월권대리인의 책임)

(1) 권한 없이 또는 그 권한을 넘어 행위한 대리인은, 본인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제3자가 놓이게 되었을 입장에 이르도록 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그러나 동 제3자가 그러한 대리인이 권한 없이 또는 그 권한을 넘어 행위함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7조

(이익상반)

(1)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본인과 대리인을 이익상반의 입장에 놓이게 하거나 제3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에는 본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권은 제3.12조 및 제3.14조 내지 제3.17조의 적용을 받는다.

(2) 그러나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a) 본인이 대리인의 이익상반행위에 동의하였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또는

(b) 대리인이 본인에게 이익상반의 사실을 고지하였는데 본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에 반대하지 않았던 경우.

### 제2.2.8조

(복대리)

대리인은 그가 직접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묵시적 권한이 있다. 복대리에는 본 절의 규칙이 적용된다.

### 제2.2.9조

(추인)

(1) 권한 없이 또는 그의 권한을 넘어 행위하는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 의해 추인될 수 있다. 추인과 동시에 그러한 대리인의 행위는 그것이 마치 처음부터 권한 내에서 수행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2) 제3자는 본인에게의 통지으로써 추인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기간 내에 추인하지 않은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of time for ratification. If the principal does not ratify within that period of time

(3) 대리인이 행위하던 때에 대리권의 결여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았어야 하지도 않았던 제3자는 주인이 있기 전에 본인에게의 통지로서 자신은 주인에 의해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밝힐 수 있다.

### **제2.2.10조**

(대리권의 종료)

(1) 대리권이 종료되더라도 제3자가 그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지도 않았던 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 대리권의 종료는 그 효력이 없다.

(2) 대리권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

## **제 3 장 유효성**

### **제3.1조**

(적용배제)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은 다음 각 호에 기인하는 계약의 효력상실을 다루지 아니한다.

(a) 무능력

(b) 부도덕 또는 불법

### **제3.2조**

(단순한 합의의 효력)

계약은 당사자간의 단순한 합의에 의해 체결, 변경 또는 종료되며, 더 이상의 요건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 **제3.3조**

(원시적 불능)

(1) 단지 의무의 이행이 계약체결시에 이미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의해서는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 단지 계약체결시에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권이 없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는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제3.4조**

(착오의 정의)

착오라 함은 계약체결시에 존재한 사실이나 법에 관한 오인을 말한다.

### 제3.5조

(취소권을 낳는 착오)

(1)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자가 만약 진실한 실재의 상태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매우 다른 내용으로 체결하였거나 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계약체결시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 상대방도 동일한 착오를 하였거나,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시켰거나, 혹은 상대방이 그러한 착오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또한 착오당사자를 착오상태에 놓아둔 것이 합리적인 상업적 공정거래의 기준에 반하는 경우; 또는

(b) 취소시에 상대방이 이미 계약을 신뢰하여 행위하지 아니한 경우.

(2) 그러나,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a) 그가 착오를 범하게 된 것이 그의 중대한 과실 때문인 경우; 또는

(b) 당해 착오가 착오당사자가 그러한 착오의 위험을 인수하였거나, 제반 상황으로 보아,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경우.

### 제3.6조

(표시상 또는 전달상의 오류)

의사나 사실의 표시 또는 전달 중에 발생한 오류는 동 의사나 사실을 표시하는 자의 착오로 본다.

### 제3.7조

(불이행에 기한 구제권이 부여되는 경우)

착오당사자는 그가 의존하는 바로 그 사실이 불이행에 기한 구제권을 부여하는 때에는, 또는 부여할 수 있었던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제3.8조

(사기)

상대방의 사기적인 표시(언행 기타 행태를 포함한다)로 인하거나, 합리적인 상업적 공정거래의 기준에 의할 때, 상대방이 고지하였어야 한 사실의 사기적인 불고지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9조

(강박)

제반 상황으로 보아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심각한 상대방의 부당한 강박으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작위 또는 부작위의 강박행위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계약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한 경우에 강박은 부당하다.

### 제3.10조

#### (현저한 불균형)

(1) 계약이나 특정한 계약조건이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과도한 이익을 부당하게 주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의 전부를 취소하거나 당해 계약조건에 한하여 계약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특히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a) 동 당사자의 종속상태, 경제적 궁핍이나 긴박한 결핍 또는 그의 경솔, 무지, 무경험 또는 교섭기술의 결여를 상대방이 이용한 사실; 그리고

(b) 당해 계약의 성격과 목적.

(2)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합리적인 상업적 공정거래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당해 계약이나 계약조건을 변용시킬 수 있다.

(3) 또한 법원은 계약취소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도 당해 계약이나 계약조건을 변용시킬 수 있되, 다만 동 당사자가 그러한 통지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또한 상대방이 그러한 통지를 신뢰하여 행위하기 전에 자신은 그러한 요청을 할 것임을 상대방에게 알렸어야 한다. 제3.1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절히 준용된다.

### 제3.11조

#### (제3자)

(1) 사기나 강박, 현저한 불균형 또는 당사자의 착오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사기나 강박, 현저한 불균형 또는 당사자의 착오의 사실을 제3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로서 그러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3자의 행위 또는 인지(認知)를 동 상대방 자신의 행위 또는 인지(認知)로 다루어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2) 사기나 강박 또는 현저한 불균형이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그러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 또는 불균형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거나 또는 계약취소가 있기 전에 이미 당해 계약을 신뢰하여 행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 제3.12조

#### (추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 취소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취소하지 못한다.

### 제3.13조

#### (취소권의 상실)

(1)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경우에는, 계약

은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이해한 대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은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계약을 이해한 바를 알게 된 후 신속하게 또한 동 당사자가 취소의 통지를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행위하기 전에 그의 그러한 의사를 밝히거나 그렇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의사표시나 이행이 있는 때에는 취소권은 소멸하고 그 전에 행하여진 취소의 통지는 그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제3.14조**

(계약취소의 통지)

당사자의 계약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서 행사된다.

### **제3.15조**

(기간제한)

(1) 계약취소의 통지는 취소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때 또는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제반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2) 제3.10조 하에서 당사자가 당해 계약조건에 한하여 계약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취소통지기간은 상대방이 동 계약조건을 원용하는 때에 개시된다.

### **제3.16조**

(일부취소)

특정한 계약조건에 한하여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는 동 계약조건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지되, 다만 제반사정으로 보아 계약의 나머지 부분만을 존속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7조**

(취소의 소급효)

(1)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취소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계약하에서 급부된 것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그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동 계약하에서 수령한 것을 동시에 원상회복하여 주거나, 성질상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가 수령한 것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3.18조**

(손해배상)

계약이 취소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계약취소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당사자는 상대방이 만약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놓였을 지위에 놓이도록 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3.19조

(강행규정성)

본 장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되, 예외적으로, 단순한 합의의 구속력이나 원시적 불능 또는 착오에 관한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0조

(단독행위예의 준용)

본 장의 규정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제 4 장 해 석

### 제4.1조

(당사자들의 의사)

(1) 계약은 당사자간의 공통된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당사자들과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부여하였을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제4.2조

(진술 기타 행위의 해석)

(1) 당사자의 진술 기타 행위는 상대방이 동 당사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때에는 동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 기타 행위는 상대방과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 하에서 부여하였을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제4.3조

(모든 사정의 고려)

제4.1조와 제4.2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당사자간의 예비적 협상
- (b)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확립한 관례
- (c) 계약체결후의 당사자들의 행위
- (d) 계약의 성격과 목적
- (e) 용어와 표현이 당해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
- (f) 관습

#### 제4.4조

(계약이나 진술의 전반에 비준 해석)

용어와 표현은 그것이 등장하는 당해 계약 또는 진술의 전반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 제4.5조

([유효해석의 원칙])

계약조건은 그 중의 일부의 효력이 부정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계약조건문의 효력이 긍정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 제4.6조

(작성자불리의 원칙)

일방이 제공한 계약조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동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우선한다.

#### 제4.7조

(언어간의 불일치)

하나의 계약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되고 각기 동등한 원본의 효력을 갖는 복수의 계약서가 존재하여 동 계약서들 사이에서 언어적인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작성된 계약서에 따른 해석이 우선한다.

#### 제4.8조

(계약공백의 보충)

(1) 당사자들이 그들의 권리·의무의 결정에 중요한 계약조건을 합의하지 않은 때에는, 제반사정으로 보아 적절한 계약조건으로써 그러한 공백을 보충한다.

(2) 무엇이 적절한 계약조건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a) 당사자들의 의사
- (b) 계약의 성격과 목적
- (c) 신의와 공정거래
- (d) 합리성

## 제 5 장 계약의 내용과 제3자의 권리

### 제 1 절 계약의 내용

#### 제5.1.1조

(명시적·묵시적 의무)

당사자들의 계약적 의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일 수 있다.

**제5.1.2조**  
(목시적 의무)

목시적 의무는 다음 각 호에서 나온다.

- (a) 당해 계약의 성격과 목적;
- (b)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확립한 관례와 관습;
- (c) 신의와 공정거래;
- (d) 합리성

**제5.1.3조**  
(당사자간의 협력)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력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때에는 그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1.4조**  
(특정한 결과를 이룰 의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 (1) 당사자의 의무가 특정한 결과를 이룰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동 당사자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내야 한다.
- (2) 당사자의 의무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동 당사자는 그와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행하는 정도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1.5조**  
(의무의 종류의 결정)

당사자의 의무가 어떤 일의 수행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결과를 이룰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a) 당해 계약에서 동 의무가 표현된 방법;
- (b) 계약대금 기타 계약조건들;
- (c) 기대된 결과를 이루는 데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정도;
- (d) 동 의무의 이행에 미치는 상대방의 영향력.

**제5.1.6조**  
(이행의 질의 결정)

계약에 의해 이행의 질이 특정되지 않았고 또한 결정될 수도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제반사정으로 보아 질적으로 합리적인 그러나 평균보다 낮지 않은 정도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제5.1.7조**  
(가격의 결정)

(1) 계약에서 가격을 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가격을 정하기 위한 규정도 두지 않은 경우에, 다른 표시가 없는 한, 당사자들은 계약체결당시에 그러한 이행에 대해 당해 거

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징구되는 가격을, 그러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 일방이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여 결정된 가격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러한 가격은 다른 어떠한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체된다.

(3) 제3자가 가격을 정하기로 하였으나 그가 가격을 정할 수 없거나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

(4)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하였거나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것과 가장 등가적인 요소를 그 대체기준으로 사용한다.

#### **제5.1.8조**

(불확정한 기간의 계약)

그 기간이 불확정한 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해 합리적인 기간의 사전통지로서 종료될 수 있다. 154

#### **제5.1.9조**

(합의에 의한 채무면제)

(1)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합의로써 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2) 무상의 권리포기제이는 채무자가 그러한 제의를 알게 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은 한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 2 절 제3자의 권리**

#### **제5.2.1조**

(제3자를 위한 계약)

(1) 당사자들(“행약자”와 “수약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써 제3자(“수익자”)에게 권리를 줄 수 있다.

(2) 행약자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의 존재와 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또한 동 합의상의 조건 기타 제한에 따른다.

#### **제5.2.2조**

(제3자의 확정)

수익자는 계약에 의해 충분히 확실하게 확정되어야 하나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

#### **제5.2.3조**

(수익자의 의무나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계약조항)

수익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수익자의 의무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계약조항을 원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 제5.2.4조

(항변사유)

행약자는 그가 수약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사유를 수익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 제5.2.5조

(권리부여의 취소)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에 의해 수익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되, 다만 수익자가 그러한 권리를 수락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행동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

#### 제5.2.6조

(수익자의 권리포기)

수익자는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 제 6 장 이 행

### 제 1 절 이행 일반

#### 제6.1.1조

(이행기)

당사자는 다음의 시기에 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a) 계약에 의하여 시기가 정하여져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 (b) 계약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시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
- (c)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 제6.1.2조

(일시이행 또는 분할이행)

제6.1.1조 제b호 또는 제c호의 경우에, 그 일시이행이 가능하고 또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의 의무를 일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제6.1.3조

(일부이행)

(1) 채권자는 이행기 이후에는 일부이행의 제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때 그러한 제의와 병행하여 잔여부분의 이행에 대한 이행보장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일부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되 그러나 이로 인하여 여타의 구제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6.1.4조

##### (이행의 순서)

(1) 당사자들이 그들의 이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일방의 이행이 기간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당사자가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 제6.1.5조

##### (조기이행)

(1) 채권자는 채무자의 조기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가 조기이행을 수락하더라도 그의 의무의 이행기가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과는 무관하게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한 수락은 그의 의무의 이행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조기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되 그러나 이로 인하여 여타의 구제권이 영향을 받지는 아니한다.

#### 제6.1.6조

##### (이행지)

(1) 이행지가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또한 결정될 수도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다음의 장소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a)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b) 기타의 채무는 자신의 영업소에서.

(2) 당사자는 계약체결후의 그의 영업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6.1.7조

##### (수표 기타 지급수단에 의한 금전지급)

(1) 금전지급은 당해 영업소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1항에 의하거나 혹은 자의로, 수표 기타 지급지시 또는 지급약속을 수취하는 채권자는 그것이 결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수취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제6.1.8조

##### (자금이체에 의한 지급)

(1) 채권자가 특정한 계좌를 적시하지 않은 한, 금전지급은 채권자에 의해 그가 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융기관의 그의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할 수 있다.

(2) 이체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는 채권자의 금융기관으로 향하는 당해 이체가 그 효력을 발생한 때에 소멸한다.

**제6.1.9조**  
(지급통화)

(1) 금전채무가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때에도, 채무자는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당해 통화가 자유로이 환금가능하지 않은 경우; 또는
- (b) 당사자들이 오직 당해 금전채무가 표시된 통화로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채무자가 당해 금전채무가 표시된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채권자는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1항 제b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3) 지급지의 통화에 의한 지급은 당해 채무의 이행기에 지급지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4) 그러나, 이행기에 채무자가 부지급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또는 실제지급시에 통용되는 환율에 따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10조**  
(통화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금전채무가 특정한 통화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은 지급이 행하여져야할 장소의 통화로 하여야 한다.

**제6.1.11조**  
(이행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의 이행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1.12조**  
(금전변제의 총당)

(1)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수개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지급시에 당해 지급이 어느 채무의 변제로 의도된 것인지를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은 비용, 발생한 이자, 원본의 순서로 채무를 소멸시킨다.

(2) 채무자의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급이 있는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동 지급이 변제충당되는 채무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되, 다만 그러한 채무는 이행기에 놓여 있고 또한 다툼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제충당이 없는 경우에는, 금전지급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무에 거기에 적시된 순서로 변제충당된다:

- (a) 이행기에 있거나 먼저 이행기에 도달할 채무;
- (b) 채권자의 담보가 최소인 채무;
- (c) 채무자의 부담이 최대인 채무;
- (d) 먼저 발생한 채무.

위의 기준들 중에서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때에는, 금전지급은 모든 채무의 비율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 **제6.1.13조**

(비금전채무의 변제충당)

제6.1.12조는 비금전채무의 변제충당에 준용된다.

#### **제6.1.14조**

(공적 인·허가의 신청)

어떤 국가의 법규에 의해 계약의 유효성이나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공적 인·허가의 취득이 요구되고 또한 그러한 법규와 제반 상황이 달리 가리키지 않는 한,

(a) 당사자의 일방만이 그러한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때에는, 동 당사자가 그러한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기타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행을 위해 인·허가의 취득이 요구되는 당사자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1.15조**

(인·허가를 신청할 때의 절차)

(1) 인·허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그렇게 하여야 하고 또한 그에 수반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그러한 당사자는 적절한 한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상대방에게 당해 인·허가의 취득 또는 거절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1.16조**

(인·허가를 취득하지도 못하고 인·허가가 거절되지도 않은 경우)

(1) 의무 있는 당사자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합의된 기간 내에 또는, 합의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동시에 동 인·허가가 거절되지도 않은 때에는 어느 당사자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해 인·허가가 단지 계약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 인·허가가 거절되었더라도 제반 정황으로 보아 계약의 나머지 부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한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6.1.17조

(인·허가가 거절된 경우)

(1)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의 거절은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 그러한 인·허가의 거절이 계약의 일부에 한하여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반 상황으로 보아 계약의 나머지 부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한 그러한 일부만이 무효가 된다.

(2) 인·허가의 거절이 계약의 이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하게 하는 때에는 불이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 제 2 절 이행가혹

### 제6.2.1조

(계약준수의 원칙)

당사자 일방의 계약이행이 보다 가중(加重)하게 되더라도 동 당사자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되 다만 이행가혹에 관한 다음의 규정들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2조

(이행가혹의 정의)

당사자의 이행비용이 증가하거나 당사자가 수령하는 이행의 가치가 감소함으로써 인하여 당해 계약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사정(이하 '가혹사유'라 한다)이 발생하고 또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이행가혹이 성립한다.

(a) 가혹사유가 계약체결후에 발생하거나 이행가혹당사자가 가혹사유를 계약체결후에 알게 되었을 것;

(b) 이행가혹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가혹사유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없었을 것;

(c) 가혹사유가 이행가혹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것일 것; 그리고

(d) 이행가혹당사자가 가혹사유의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

### 제6.2.3조

(이행가혹의 효과)

(1) 이행가혹의 경우에 이행가혹당사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는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행하여져야 하고 또한 그 기초가 된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재협상요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행가혹당사자에게 이행보류권을 주지 아니한다.

(3)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때에는, 어느 당사자든지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다.

(4) 이행가혹을 긍정하는 법원은, 합리적인 한,

(a) 그 시기와 그 계약조건을 새로이 정하여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b) 계약의 균형을 복구하는 견지에서 계약을 변용시킬 수 있다.

## 제 7 장 불 이 행

### 제 1 절 불이행 일반

#### 제7.1.1조 (불이행의 정의)

불이행은 당해 계약하에서 당사자에 의한 그의 어떠한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불완전한 이행이나 지체된 이행을 포함한다.

#### 제7.1.2조 (상대방의 방해)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나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한 불이행을 원용할 수 없다.

#### 제7.1.3조 (이행보류)

(1) 양당사자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2) 양당사자가 순차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후에 이행할 당사자는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 제7.1.4조 (불이행당사자에 의한 치유)

(1) 다음의 요건하에서 불이행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의 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다.

(a) 불이행당사자가 부당하게 지체함이 없이 그 치유의 방법과 시기를 제시하여 통지할 것;

(b) 제반사정으로 보아 치유가 적절할 것;

(c) 피해당사자가 치유를 거절하는 데 적법한 이익을 갖지 않을 것; 그리고

(d) 치유가 즉시 실행될 것.

(2) 치유권은 계약해제의 통지에 의해 방해되지 아니한다.

(3) 유효한 치유통지가 있는 때에는, 불이행당사자의 이행에 반하는 피해당사자의 권리는 당해 치유를 위한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정지된다.

(4) 피해당사자는 치유가 있을 때까지 그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5) 치유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는 여전히 지연손해와 당해 치유에 의하여 야기되었거나 방지되지 않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1.5조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1)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피해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서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그러한 추가기간동안에는 피해당사자는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고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타의 구제권은 원용할 수 없다. 피해당사자가 불이행당사자로부터 그러한 추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받거나 혹은 그러한 추가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이행이 정히 행하여지지 않은 때에는 피해당사자는 본 장 하에서 허용되는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중대하지 않은 이행지체의 경우에, 합리적인 추가기간을 허여하여 통지한 피해당사자는 그러한 기간의 만료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불합리하게 짧게 허여된 추가기간은 합리적인 정도로 연장된다. 피해당사자는 추가기간을 허여하는 그의 통지에서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추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명시할 수 있다.

(4) 이행되지 아니한 의무가 불이행당사자의 당해 계약상의 의무의 사소한 부분에 불과한 때에는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7.1.6조

#### (면책조항)

당사자의 일방의 불이행책임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계약조항이나 일방이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와는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조항은 그 원용을 하는 것이 당해 계약의 목적으로 보아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는 원용될 수 없다.

### 제7.1.7조

#### (불가항력)

(1) 당사자가 그의 의무의 불이행이 그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점과 계약체결시에 그러한 장애를 고려하거나 그러한 장애 또는 그러한 장애의 결과를 회피 또는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2) 장애가 단지 한시적인 경우에는 면책은 동 장애가 당해 계약의 이행에 미친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간동안 그 효력이 있다.

(3) 불이행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장애 및 동 장애가 그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불이행당사자가 그러한 장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이행당사자는 그러한 부도달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의 계약해제권이나 이행보류권,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한 이자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 2 절 이행청구권

### 제7.2.1조

(금전채무의 이행)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2.2조

(비금전채무의 이행)

금전지급 외의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a) 이행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b) 이행이나, 적절한 경우, 그 강제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비용을 야기하는 경우;
- (c) 이행청구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타처에서 이행을 득할 수 있는 경우;
- (d) 이행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또는
- (e) 이행청구당사자가 불이행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제7.2.3조

(불완전한 이행의 추완 [또는] 대체)

이행청구권은 적절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이행의 추완, 대체 기타 치유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에 따라 제7.2.1조와 제7.2.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제7.2.4조

(사법적 제재금)

(1) 당사자에게 이행을 명하는 법원은 또한 동 당사자가 동 명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제재금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재금은 법정지의 법규의 강행규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피해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피해당사자에게 제재금의 지급은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해하지 아니한다.

### 제7.2.5조

(구제권의 변경)

(1) 비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또는 기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을 수령하지 못한 피해당사자는 여타의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비금전채무의 이행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강제집행될 수 없는 때에는, 피해당사자는 여타의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 3 절 계약해제

#### 제7.3.1조

(계약해제권)

(1)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의무의 불이행이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불이행이 당해 계약하에서 피해당사자가 기대할 권리가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지 여부. 다만 그러함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한다;

(b) 불이행된 동 의무의 엄격한 이행이 계약의 핵심인지 여부;

(c) 불이행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것인지 여부,

(d) 불이행이 피해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장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지 여부;

(e)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불이행당사자가 그의 이행이나 그 준비의 결과로 형평에 반하는 손실을 겪게 되는지 여부.

(3)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7.1.5조하에서 허용된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3.2조

(계약해제의 통지)

(1) 계약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으로써 행사된다.

(2) 이행이 늦게 제공되었거나 기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부적합한 이행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지 않은 피해당사자는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 제7.3.3조

(불이행의 예견)

당사자 일방의 이행이 있어야 할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그의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3.4조

(적절한 이행보장)

장차 상대방의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것임을 합리적으로 믿는 당사자는 적절한 이행 보장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동안에는 그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이행보장이 제공되지 않는 때에는 이행보장을 요구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3.5조

(계약해제의 효과 일반)

(1) 계약해제는 양당사자 모두를 그들의 장래의 이행을 행하고 수령할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2) 계약해제는 불이행에 기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 계약해제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계약 소정의 규정이나 계약해제후에도 작용하여야 할 여타의 계약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7.3.6조

(원상회복)

(1)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자신이 급부한 모든 것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되, 자신이 수령한 모든 것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이 성질상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한,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그러나 계약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이행되어 왔고 또한 동 계약의 분할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한 반환은 계약해제가 그 효력을 발생한 후의 기간에 이행된 것에 한한다.

## 제 4 절 손해배상

### 제7.4.1조

(손해배상청구권)

불이행은 피해당사자에게 배타적이거나 또는 여타의 구제권과 연계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본 국제상사계약원칙하에서 동 불이행에 대하여 면책이 긍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4.2조

(완전배상)

(1) 피해당사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완전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손해는 피해당사자가 입은 모든 손실과 그가 상실한 모든 이익을 포함하되, 그가 그의 비용이나 손해의 발생을 피하게 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손해는 비금전적일 수도 있고 또한, 예를 들어 육체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다.

#### 제7.4.3조

(손해의 확실도)

(1) 배상되어야 할 손해는 합리적인 정도로 확실한 손해(장래의 손해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 기회상실의 손해는 그 발생확률에 비례하여 배상되어야 한다.

(3) 충분한 정도로 확실하게 손해액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산정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다.

#### 제7.4.4조

(예견가능한 손해)

불이행당사자는 그가 그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계약체결시에 예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 제7.4.5조

(대체거래의 경우의 손해의 증명)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거래를 한 경우에 그는 계약가격과 대체거래가격의 차액 및 기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4.6조

(시가에 의한 손해의 증명)

(1)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서도 대체거래를 하지 않았으나,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적용될 시가(時價)가 있는 경우에는, 그는 계약가격과 해제당시의 시가와와의 차액 및 기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시가(時價)라 함은 인도된 물품이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이 이행되었어야 한 장소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징구되는 가격을 말하며, 동 장소에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용하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다른 장소에서의 시가를 말한다.

#### 제7.4.7조

(피해당사자에 일부 기인한 손해)

손해가 피해당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나 그가 위험을 부담하는 사유에 일부 기인한 때에는, 손해배상액은 각 당사자의 행위를 참작하여 그러한 요인들이 동 손해에 기여한 범위를 한도로 감액된다.

**제7.4.8조**  
(손해의 경감)

(1) 불이행당사자는 피해당사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감될 수 있었던 범위까지는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피해당사자는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데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9조**  
(금전부지급에 기한 이자)

(1) 당사자가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당사자는 동 금전이 지급되었어야 한 때부터 실제지급시까지의 동 금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당해 부지급(不支給)의 면책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2) 그 이율은 지급지에서 당해 지급통화의 우량금전차용인들에게 널리 적용되는 평균은행단기대출이자율이나, 지급지에 그러한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통화[를 법화로 하는] 국가에서의 그러한 이자율로 한다. 그러한 두 장소 모두에서 그러한 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율은 당해 지급통화[를 법화로 하는] 국가의 법이 정하는 적절한 이율로 한다.

(3) 금전부지급(金錢不支給)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손해를 입은 피해당사자는 그러한 추가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10조**  
(손해배상금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

달리 약정되지 않은 한, 비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기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불이행시부터 발생한다.

**제7.4.11조**  
(금전배상의 방법)

(1) 손해는 그 총액이 일시에 배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해 손해의 성격에 의해 적절한 경우에는 손해를 분할하여 배상할 수 있다.

(2) 손해의 분할배상은 일정한 지수와 연동되도록 할 수 있다.

**제7.4.12조**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통화)

손해배상액은 당해 금전채무의 표시통화와 손해발생통화 중에서 보다 적절한 통화로 산정되어야 한다.

### 제7.4.13조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1) 계약에서 불이행당사자가 그의 불이행에 대하여 피해당사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피해당사자는 그의 실제손해와는 상관없이 동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러나, 비록 달리 합의되었더라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약정금액이 현저하게 과도한 때에는 이를 합리적인 정도로 감액할 수 있다.

## 제 8 장 상 계

### 제8.1조

(상계의 요건)

(1) 쌍방이 서로 금전채무 기타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상계당사자”)는 상계시에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그의 채무와 그의 채권자(“상대방”)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a) 상계당사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b) 상대방의 채무가 그 존재와 양의 면에서 확정되어 있고 또한 이행하여야 할 상태에 놓여 있을 것.

(2)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당사자는 또한 그의 채무와 그 존재와 양이 확정되지 않은 상대방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 제8.2조

(외화채무의 상계)

상이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두 금전채무의 경우, 두 통화가 자유로이 상호 환금 가능하고 또한 상계당사자가 오직 특정한 통화로만 지급할 것을 당사자들이 약정하지 않은 한 상계권은 행사될 수 있다.

### 제8.3조

(상계의 통지)

상계권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으로써 행사된다.

### 제8.4조

(통지의 내용)

(1) 상계의 통지는 상계되는 채무들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상계의 통지에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계당사자에게 상계되는 채무를 적시할 수 있다. 그러한 적시가 없는 때에는, 모든 채무가 비율적으로 상계된다.

**제8.5조**  
(상계의 효과)

- (1) 상계는 채무를 소멸시킨다.
- (2) 채무들이 양적으로 상이하다면, 상계는 양적으로 적은 채무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소멸시킨다.
- (3) 상계는 통지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 9 장 채권양도, 채무이전, 계약양도**

**제 1 절 채권양도**

**제9.1.1조**  
(정의)

“채권양도”라 함은 금전지급 기타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방(“양도인”)의 제3자(“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합의로써 타인(“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9.1.2조**  
(적용배제)

본 절은 다음 각 호의 양도를 규율하는 특별한 법규하에서 행하여지는 양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유통가능증권, 권리증권 또는 금융증권과 같은 증권의 양도, 또는
- (b) 기업양도의 과정에서 권리의 이전.

**제9.1.3조**  
(비금전채권의 양도)

비금전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양도로 인하여 채무의 부담이 현저하게 가중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될 수 있다.

**제9.1.4조**  
(일부양도)

- (1)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은 그 일부만이 양도될 수 있다.
- (2) 기타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것이 분할가능하고 또한 양도로 인하여 채무의 부담이 현저하게 가중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만이 양도될 수 있다.

**제9.1.5조**  
(장래의 채권)

장래의 채권은, 그것이 존재하게 된 때에, 양도되는 채권으로서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시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제9.1.6조

(일괄양도)

복수의 채권도, 양도당시에 또는 동 채권들이 존재하게 된 때에 양도되는 채권으로서 특정될 수 있는 한, 개별지정 없이 양도될 수 있다.

### 제9.1.7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양도)

(1) 채무자에게의 통지가 없이도 단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 채권은 양도된다.

(2) 채무가 상황에 따라 인적 성질을 갖지 않은 한 채무자의 동의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 제9.1.8조

(채무자의 추가비용)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 제9.1.9조

(양도금지특약)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양도를 제한 또는 금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해 계약위반의 책임을 진다.

(2) 기타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양도는 그것이 그것을 제한 또는 금하는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양수인이 양도시에 그러한 약정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았어야 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양도는 효력이 있다. 이때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해 계약위반의 책임을 진다.

### 제9.1.10조

(채무자에게의 통지)

(1)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수령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2) 그러한 통지를 수령한 후에는, 채무자는 오직 양수인에게 변제함으로써만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 제9.1.11조

(이중양도)

동일한 채권이 동일한 양도인에 의해 둘 이상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경우,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수령한 순서에 따라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 제9.1.12조

(양도의 적절한 증거)

(1) 양수인이 양도통지를 하는 경우, 채무자는 양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적절한 증거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할 것을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적절한 증거가 제공될 때까지, 채무자는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3) 적절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통지는 효력이 없다.

(4) 적절한 증거는 양도인에게서 나온 것으로 당해 양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포함하나 그에 한하지 아니한다.

### 제9.1.13조

(항변사유와 상계권)

(1) 채무자는 그가 양도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던 모든 항변사유를 양수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수령하기까지는 그가 양도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던 상계권을 양수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 제9.1.14조

(양도되는 채권에 부종하는 권리들)

채권양도는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이전시킨다:

(a) 양도되는 채권에 부종하는 것인 한, 계약상의 양도인의 모든 지급청구권 기타 이행청구권, 및

(b) 양도되는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는 모든 권리.

### 제9.1.15조

(양도인의 보장)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다음을 보장한다. 다만, 양수인에게 이미 고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양도되는 채권이, 장래의 채권이 아닌 한, 양도당시에 존재함;

(b) 양도인은 당해 채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음;

(c) 당해 채권이 이전에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않았고 또한 제3자의 권리나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움;

(d) 채무자가 항변사유를 갖고 있지 않음;

(e) 채무자와 양도인이 양도되는 채권을 대상으로 상계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통지를 하지도 않을 것임;

(f) 양도인은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 그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양수인에게 상환할 것임.

## 제 2 절 채무이전

### 제9.2.1조

(채무이전의 방법)

금전지급 기타 이행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합의에 의해 어느 일인(“원채무자”)에게서 타인(“신채무자”)에게로 이전한다:

- a) 제9.2.3조의 제한을 받는 원채무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합의, 또는
- b) 신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합의.

### 제9.2.2조

(적용배제)

본 절은 기업양도의 과정에서의 채무의 이전을 규율하는 특별한 법규하에서 행해지는 채무이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9.2.3조

(채무이전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의 요건)

원채무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채무이전은 채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 제9.2.4조

(채권자의 사전동의)

- (1) 채권자는 미리 동의할 수 있다.
- (2) 채권자가 미리 동의한 경우에, 채무이전은 채권자에게 채무이전의 통지를 한 때 또는 채권자가 채무이전을 승인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9.2.5조

(원채무자의 채무면제)

- (1) 채권자는 원채무자를 그 채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 (2) 채권자는 또한 원채무자를 신채무자가 정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채무자로 남게 할 수 있다.
- (3) 기타의 경우에는 원채무자는 신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자로 남는다.

### 제9.2.6조

(제3자에 의한 이행)

(1)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도, 채무자는 제3자와 계약하여 동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다만 채무가 상황에 따라 인적 성질을 갖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 제9.2.7조

(항변사유와 상계권)

(1) 신채무자는 원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던 모든 항변사유를 채권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2) 신채무자는 원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었던 상계권을 채권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없다.

### 제9.2.8조

(이전되는 채무에 부증하는 권리)

(1) 채권자는 이전되는 채무에 부증하는 것인 한 당해 계약상의 모든 지급청구권 기타 이행청구권을 신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2) 원채무자가 제9.2.5조 제1항하에서 그의 채무에서 벗어난 경우에, 신채무자 외의 제3자가 당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는 그 제3자가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계속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소멸한다.

(3) 원채무자가 그의 채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그가 그 채무의 이행을 위해 제공한 담보도 또한 소멸하되, 다만 그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원채무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거래의 일부로서 양도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 절 계약양도

### 제9.3.1조

(정의)

“계약양도”라 함은 제3자(“원계약의 상대방”)와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어느 일인(“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이 타인(“양수인”)에게 함의로써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제9.3.2조

(적용배제)

본 절은 기업양도의 과정에서의 계약양도를 규율하는 특별한 법규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양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9.3.3조

(원계약의 상대방의 동의의 요건)

계약양도는 원계약의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 제9.3.4조

(원계약의 상대방의 사전동의)

- (1) 원계약의 상대방은 미리 동의할 수 있다.
- (2) 원계약의 상대방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 계약양도는 원계약의 상대방에게 양도 통지를 한 때 또는 원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양도를 승인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9.3.5조

(양도인의 채무면제)

- (1) 원계약의 상대방은 양도인을 그의 채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 (2) 원계약의 상대방은 또한 양도인을 양수인이 정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채무자로 남게 할 수 있다.
- (3) 기타의 경우에는 양도인은 양수인과 연대하여 원계약의 상대방의 채무자로 남는다.

### 제9.3.6조

(항변사유와 상계권)

- (1) 계약양도가 채권양도를 포함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9.1.13조를 준용한다.
- (2) 계약양도가 채무인수를 포함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9.2.7조를 준용한다.

### 제9.3.7조

(계약과 함께 이전되는 권리)

- (1) 계약양도가 채권양도를 포함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9.1.14조를 준용한다.
- (2) 계약양도가 채무인수를 포함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9.2.8조를 준용한다.

## 제10장 제소기한

### 제10.1조

(본 장의 적용범위)

(1)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의 적용을 받는 권리의 행사는 “제소기한”으로 명명된 기간의 만료에 의해 본 장의 규칙에 따라 금지된다.

(2) 본 장은 본 국제상사계약원칙하에서 일방이, 그의 권리의 취득 또는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할 기간이나 [소송이나 중재 등의: 역자주]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행위 외의 행위를 하여야 할 기간의 한도를 규율하지 아니한다.

### 제10.2조

(제소기한)

(1) 일반제소기한은 3년이며 이는 권리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일자의 익일에 개시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제소기한은 10년이며 이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던 일자의 익일에 개시된다.

### 제10.3조

(당사자들에 의한 제소기한의 변경)

(1) 당사자들은 제소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그러나 당사자들은

(a) 일반제소기한을 1년보다 단기로 할 수 없다;

(b) 최대제소기한을 4년보다 단기로 할 수 없다;

(c) 최대제소기한을 15년보다 장기로 할 수 없다.

### 제10.4조

(권리시인에 의한 제소기한의 갱신)

(1) 일반제소기한이 도과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시인한 경우에는, 그러한 시인이 있는 일자의 익일에 새로운 일반제소기한이 개시된다.

(2) 최대제소기한은 갱신되지 않으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일반제소기한의 개시에 의해 초과될 수 있다.

### 제10.5조

(사법절차에 의한 기간진행정지)

(1) 제소기한의 진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지된다.

(a) 채권자가 사법절차를 개시함으로써 혹은 이미 개시된 사법절차 중에 법정지의 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주장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b)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당해 도산절차에서 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c)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채권자가 당해 해산절차에서 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2) 기간진행정지는 종국판결이 선고되거나 기타 당해 절차가 종료되는 때까지 지속된다.

### 제10.6조

(중재절차에 의한 기간진행정지)

(1) 제소기한의 진행은 채권자가, 중재절차를 개시함으로써 혹은 이미 개시된 중재

절차 중에, 당해 중재절차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주장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정지된다. 중재절차법규나 중재절차의 정확한 개시일을 결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절차는 문제의 권리를 대상으로 한 중재요청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자의 익일에 개시된 것으로 본다.

(2) 기간진행정지는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이 선고되거나 기타 당해 절차가 종료되는 때까지 지속된다.

### 제10.7조

(소송외분쟁해결)

제10.5조와 제10.6조의 규정은 당사자들이 그들간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여타의 분쟁해결절차에 준용된다.

### 제10.8조

(불가항력, 사망 기타 능력상실의 경우의 기간진행정지)

(1) 채권자가 그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의해 방해를 받아 앞의 규정들하에서 제소기한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그가 그러한 장애를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일반제소기한은 그 진행이 정지되고 또한 그러한 장애가 사라진 후 1년 내에는 만료되지 아니한다.

(2) 채권자나 채무자의 능력상실 또는 사망이 그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당사자 또는 그의 재산의 대리인 혹은 대표자가 선임되거나 승계인이 그러한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에 기간진행이 재개한다. 이 각각의 경우에 제1항 소정의 일년추가규칙이 적용된다.

### 제10.9조

(제소기한만료의 효과)

(1) 제소기한의 만료는 권리는 소멸시키지 아니한다.

(2) 제소기한의 만료는 채무자가 항변으로서 이를 주장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3) 권리의 제소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동 권리에 의존하여 항변할 수 있다.

### 제10.10조

(상계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소기한만료를 주장하기 전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0.11조

(반환)

채무변제를 위한 이행이 이미 있었던 경우에, 단지 제소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